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 8. 4.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 등 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전문인력 지정신청서 등 전략기술 보호와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신고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8조)

나. 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신속처리신청서,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특화단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12조)

다. 특성화대학,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13조~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2조(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영 제28조제1항의 전략기술 해외인수·

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의 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영 제30조제4항의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제1항의 전문인력등 지정신청

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9조(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7조제2항의 신속처리신청서는 별

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0호 서

식에 따른다.

제11조(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지원 대상) 국가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특화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4.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화단지의 용지
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5. 특화단지 지정관련 필요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제12조(임대료 감면 등 신청서)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
료 감면을 받거나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1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
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
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략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2. 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장을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는 협약사업
3. 산학연협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15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3항의 전
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다.

- [별지 제1호 서식]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신속처리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 [별지 제11호 서식] 임대료 감면 등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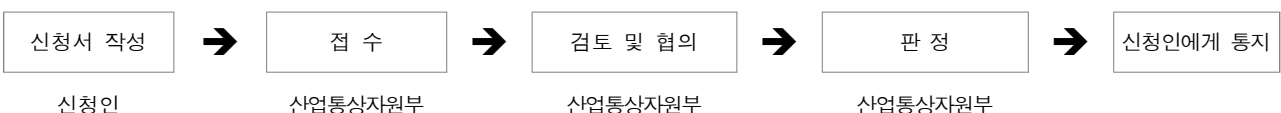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수출사유	[] 매각 ()		
		[] 이전 ()		
		[] 기타 ()		
수출 예정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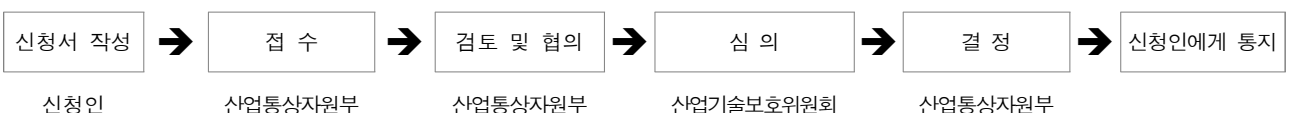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승인신청 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승인신청 사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합병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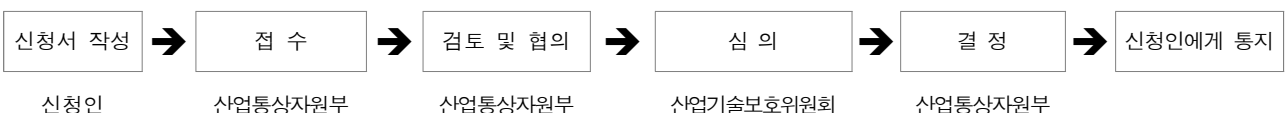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이내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고사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의 해외 인수·합병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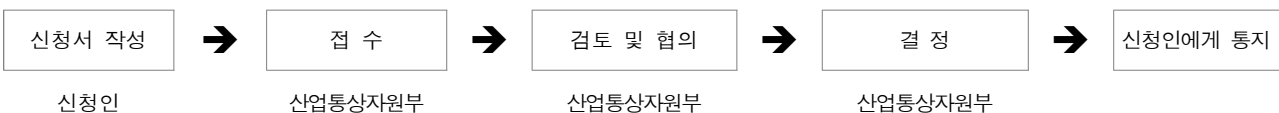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제공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이내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 휴대전화		대표 팩스번호		
	대표 전자우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신청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실 주소					
* 위 소재지와 다른 경우만 적습니다.					
정보제공 대상 전문인력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보직	정보제공기간

제공신청 사유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략기술보유자 증명서 2. 전문인력의 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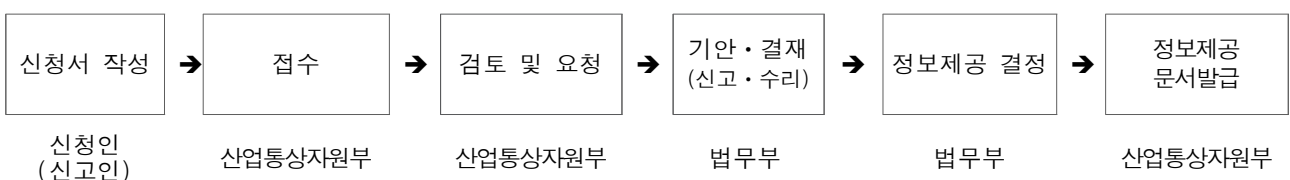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사항과 변경신고사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와 변경신고서의 해당 []에 모두 표시합니다.
2.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3.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4.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주소를 적습니다.
5.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6.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7. 정보공개서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담당자 사무실의 소재지가 회사 본점 소재지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8. 신청사항: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보공개서 관련 쪽수와 함께 적습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9. 변경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보직 및 전문인력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이내
------	------	----------------

신청인	기관명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연구기관 [] 대학 [] 전문기관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	주생산품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신청보직 및 전문인력	신청보직명:		
	신청대상자:		
	보직분야 및 신청대상자	국가첨단전략기술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보직자
		신청대상자의 보유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보직의 구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취급 보직 및 전문인력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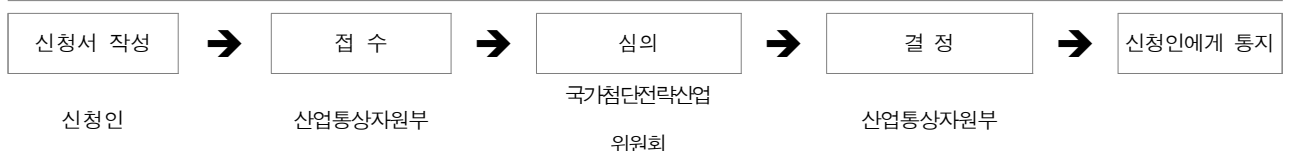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문인력등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등의 관리 방안 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 4.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연장근로 필요성 및 계획 5. 그 밖에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수수료 10,000원
------	--	----------------

처리절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 면적 m ²	소재·부품·장비산업 면적 m ²	
	주요 입주업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특화단지 육성계획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등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심의	➔	지정 고시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등 신속처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이내
신 청 인	소속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E-Mail
신속처리의 신청대상	대상 사업		
	신청처리 관련 법령		
	신속처리의 필요성		
	신속처리의 희망기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특화단지 조성사업자 증빙서류 2. 신청 인·허가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허가등 신속처리 요청	➡	인·허가 등 관련 기관의 회신	➡	결과 통보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신청인		
신청일		
신청사항		
인·허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	관할 행정기관명	
	신속처리 요청사항	
	신속처리 결과	
	신속처리 요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인·허가 등 신속처리
결과 접수



통지서 작성



통지서 송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유재산 [] 임대료 감면 [] 임대기간 갱신 [] 임대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1일 이내
------	------	------	------	--------

신청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입주특화단지명	
	특화단지입주일	
	주소	전화번호

감면/갱신/ 연장대상 국유재산	소재지	특화단지
	국유재산분류	면적(㎡)
	사용·임대기간	
	사용·임대 갱신희망기간 또는 연장기간 (국유재산 임대기간 갱신 또는 연장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관련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유재산관리중앙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사업명						
주관기관	국문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총계 (백만원)		
참여 기관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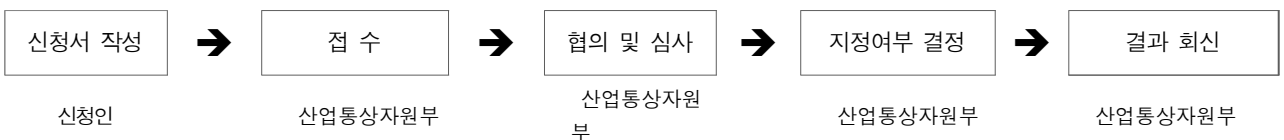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절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기관·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기관·단체의 종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융합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취지서 2. 정관 3. 해당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기관대표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종합교육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기관·단체의 종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